■ 경찰수사규칙 [별지 제119호의4서식] <신설 2026. 10. 2.>

소 속 관 서

제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)

제 목: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(사전송부)

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의2제5항 및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함께 아래와 같이 종합수사 결과를 미리 송부합니다.

사 건 번 호		
피의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
이행 기간		
보완수사요구 내용		
종합수사 결과		

소속관서

사법경찰관 계급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

【 별 지 】

1. 피의자 인적사항

2.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

3.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

4.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

5.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

6.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

7.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

8. 보완수사결과와 증거관계